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2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김경, 김기덕, 김원태,
김인제, 박승진, 성흠제,
송재혁, 오금란, 유정희,
임만균, 최재란, 한신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4년 12월 개정되어 2025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따르는 조례도 발맞춰 보완하고자 함.
-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,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보고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함.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”을 “자치구 공영도시 농업농장의 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의 중 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를 “시장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필요하면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8조(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)</u> ①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<u>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톾밭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. 쉼터, 화장실, 주차장, 관수용 물탱크, 실습교육장, 퇴비장 및 농기구 보관창고 등 농장 내 부속시설 확보 3.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 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<p>③ 제2항제3호에서 정한 운영관리계획서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<u>제18조(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)</u> ①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<u>시장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<신 설>

② 시장은 필요하면 제출받은
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
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(내부절차 개정사안)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간 정합성을 제고 하도록 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해당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